

밴쿠버 인도계 사업자들

이민 사기 혐의로 피소



밴쿠버 일대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도계 사업가 4명이 이민 사기 네트워크에 연루된 혐의로 역할로 이민 난민 보호법에 따라 피소되었다.

캐나다 국경 수비대(CBSA)가 아시아 이민 컨설턴트의 루핀더(Ron) 배트와 그의 아내 나브딕 배스에 대한 4년간의 수사를 묶어 수십 건의 이민 사기 혐의를 들추어내고 있다.

랜드 투어, 수린더 폴 싱글라, 베드 칼라, 구르타즈 그란달은 각각 여러 건의 상담을 받거나 그들의 이민과 관련된 사실을 위조하여 사람들의 불법 이민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자들은 모두 9월 초 배스와 함께 기소되었다.

2017년 씨리에 있는 캔아시아 사무실, 랭리에 있는 배쓰의 집, 여러 개의 안전보관함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 청구된 법원 서류에는 이들 4명이 운영하는 회사가 CBSA 조사에서 요주의 기업으로 지목되어 있었다.

이 문서에는 144명의 외국인과 함께 25개의 이민 사기 관련 회사들이 나열되어 있다.

CBSA의 게리 시두 수사관이 제출한 이 법원 문서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이민 사기에 대한 조사, 즉 외국 국적자들이 부정 취업 경험과 자격증을 이용해 임시 취업 허가증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과 고용주들이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패딩'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적혀 있다.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종종 요구되는 노동시장 영향평가(LMIA)의 '패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거짓으로 만들어낸다.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는 고용주나 컨설턴트의 사기나 위조를 위해 매각된다.

B.C.의 가장 큰 이민 사기 사건에서 3명의 직원이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천6백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뉴 캔 컨설턴트 이민 사기 사건에서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시두 수사관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그들이 합법적인 직업을 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데 사용된 문건의 혐의 중 법원에서 검증된 것은 없다.

투어, 싱그라, 케일러, 그로알에 대해 열거된 혐의에 근거해 볼 때, 더 광범위한 이민 사기 네트워크에서의 그들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는 거의 없다.

랜드 투어는 B.C. 올리버에 본사를 둔 데저트 힐즈 에스테이트 와이너리(Desert Hills Estate Winery)의 소유주 겸 사장이다. 그는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른 18가지 혐의와 함께 캐나다 형법에 따른 11가지 무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3개 업체와 달리, 데저트 힐즈는 법원 서류에는 이름이 없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토오르 포도밭"이 나열되어 있다. 시두가 노동시장 평

가 패딩에 관여하고 있다고 믿는 올리버 포도밭에 대한 언급도 있다. "토오르 포도밭"을 제외한 어떤 포도밭도 이 문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투어는 현재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해 18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면허나 등록 없이 총기를 소지한 10건의 혐의와 다른 1건의 무기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첫 법정 출두일은 10월 21일이다.

2014년 그의 회사 임대아파트 건물 앞에서 본 수린더 폴 싱글라는 싱라 브라더스 홀딩스의 설립자 겸 사장이다. 그는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라 10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싱글라를 부동산 개발, 임대, 굴착 등을 전문으로 하는 펜티콘 소재 싱라브라더스 홀딩스(Singla Brothers Holding Ltd)의 사장이자 설립자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0건의 사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언론은 2018년 싱라 자택에서 CBSA가 급습한 사실을 취재했지만, 현재까지 수색 결과 혐의가 나올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케일러는 B.C. 델타에 본사를 둔 VK Delivery and Moving의 설립자다. 그는 출입국 및 난민 보호법에 따라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Kaler는 VK Delivery and Moving 회사를 설립하였고, 현재 회장을 맡고 있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는 8개의 참고, 60개가 넘는 트럭, 최소 100명의 직원을 자랑한다고 말한다.

9월 이민자 고용도 서서히 증가



캐나다 노동력에 고용된 이민자의 수는 9월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되찾으면서 덩달아 증가했다.

최근 캐나다 통계청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9월 고용은 2.1% 증가해 노동력이 1.4% 증가한 8월보다 훨씬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는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노동 시장에서 수집되었다. 캐나다의 고용률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이전 수준의 3.7% 즉 72만 개에 달하는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숙박 및 식품 서비스업과 소매업 업종은 회복면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 이민자의 고용률은 COVID 이전 수준을 맴돌고 있다. 캐나다로 이주한 지 5년도 안된 아주 최근의 이민자들의 고용률은 63.6%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움직임은 여행 제한이 시행된 이후 입국하는 신규 이민자의 수가 줄어든 데 일부 기인한다.

5년 이상 전에 캐나다에 들어온 이민자들은 9월에 57.8%까지 고용이 1.7% 증가했다. 캐나다 태생의 노동자들은 60퍼센트로 0.5%포인트 증가했다.

캐나다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5년 전 캐나다에 상륙한

이민자들은 COVID-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및 임대 산업에서 최근 이민자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 통계청 보고서는 이들 최근 이민자들이 저임금 일자리에서 3월과 4월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전형적으로 신규 채용 직원들이었고 정리해고에 더 취약했다.

9월 캐나다 노동력 동향은 이민자들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실업률은 미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학교서 동성결혼 퇴학시킬 수 있다



미법원, 풀러신학교 손들어 종교 기관 면제 조항 적용

법원이 종교적 신념과 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한 학생을 제명할 신학교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향후 한인 교회 등 종교 기관이 동성결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연방법원 1부 중부지법(담당 판사 콘수엘로 마셜)은 조안나 맥스 등이 풀러신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소송과 관련, 신학교 측이 요구한 소송 각하 신청을 승인했다.

풀러신학교는 패서디나 지역의 유명 복음주의 신학교로 한인 목회자들도 다수 배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시작됐다. 재학 당시 동성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풀러신학교에서 제명당한 맥스씨는 소장에서 "동성결혼자에 대한 퇴학 조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러한 풀러신학교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도 받아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종교 기관 면제(Religious Organization Exemption)' 조항을 적용했다.

마셜 판사는 풀러신학교의 소송 각하 신청을 승인하며 "

동성결혼, 혼외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으며 연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풀러신학교측 변호를 맡은 베키 로퍼는 성명을 통해 "풀러신학교는 수정 헌법 1조가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 기독교 동맹체 구성원을 위한 특정 윤리, 도덕적 기준 등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교회, 신학교 등 종교 단체는 각자의 종교적 믿음과 사명에 따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풀러는 웨스트민스터, 덴버, 트리니티, 고든콘웰 등과 함께 미국 내 대표 복음주의 신학교로 꼽힌다. 재학생은 3500여 명이다.

헨슨&컴퍼니 변호사 사무실

한국어 법률 상담 403-537-8861

"법률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까? 서두르거나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최상의 방안을 찾아 최고의 결과를 만드십시오!"

변 호 사

법 무 사



Gary E Hansen
캐나다 최고의 이민변호사



Ben Plumer
소송 / 개인상해 / 이혼 전문 변호사



에릭 김

- 부동산
- 여권 및 영주권사진
- 개인상해
- 공증
- 위임장
- 유언장 & 상속
- RCMP 범죄경력서를 위한 지문조회

미국이민 · 캐나다이민 · 회사법 · 공증 · 부동산 · 유언장 & 상속 · 이혼 · 위임장 · 개인상해 · 소송

HANSEN & COMPANY

558 - 9th Avenue S.E., Calgary, Alberta T2G 0S1 www.hansen-company.com / Tel. 403-261-6890 / Fax. 403-263-1632